제26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 11. 28.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년 11월 28일
전문위원 배 금 택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2019 - 81

나. 제 출 자: 강서구청장

다. 제출일자: 2019년 11월 5일

라. 회부일자: 2019년 11월 20일

2. 개정이유

사회적기업 관련 규정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촉진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정비 및 위원회 비상설화 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회적기업 관련 규정의 변경사항 반영**(안 제2조제3호)

나. **공유촉진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 정비**(안 제11조제3항)

다. **공유촉진위원회 비상설화 규정 마련**(안 제11조제4항)

라.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2019. 10. 2. ~ 10. 22.)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

○ 공유촉진위원회 위원 자격을 정비하여 전문성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위원회의 비상설화 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 개정내용

○ **사회적기업 관련 근거규정 개정(안 제2조제3호)**

-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2017. 11. 8.)에 따른 인용조례 제명 및 용어 변경

▷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경제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형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공유촉진위원회 위촉직 위원 자격 요건 정비(안 제11조제3항)**

- 학계에서 공유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업무 경험자
- 공유관련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위원회 비상설화 운영 규정 마련(안 제11조제4항)**

- 위원의 임기 규정(2년 임기, 1회 연임)을 폐지하고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해당 안건 의결 후 자동해산 하도록 규정 마련

다. 종합 의견

○ **공유촉진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개정**

- 안 제11조제3항은 공유촉진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개정한 것으로 위촉직 위원은 공유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비영리 민간단체·비영리법인·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 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공유 관련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 구성하도록 하여 공유촉진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안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의 공유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안건 특성에 따른 위원 선정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여지나

- 위원 선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의 자격은 가급적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해당 조항의 신설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공유촉진위원회 비상설화 운영 규정 마련**

- 행정안전부의「2019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르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 및 필요성을 자체 검토 후 최근 1년간 위원회 개최실적이 없으며 향후에도 안건 발생빈도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회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으며

- 강서구 공유촉진위원회의 그간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2016년 대면심의 1회, 서면심의 2회, 2017년 대면심의 1회, 서면심의 2회 운영 후 2018년부터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참고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 제1항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